

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: 김재진 의원
- 나. 의안번호: 제2942호
- 다. 발의일자: 2025. 8. 11.
- 라. 회부일자: 2025. 8. 14.

2. 제 안 사 유

- 한강버스는 서울시의 핵심 수상 교통사업으로, 최근 한강버스 선착장 등 관련 인프라의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음. 그러나 선착장 등 수상 교통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관리 규정이 미비하여, 조례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.
-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버스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,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‘한강버스 선착장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(안 제2조제7호 신설).
- 나.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대책 마련 및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(안 제3조제5항, 제6항 신설).
- 다. 사업자의 책무에 시설의 성능 저하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에 관한 성실 대응 규정을 신설함(안 제4조제3항 신설).

라. 사업자의 방만경영 방지를 위한 내용을 신설함(안 제8조제3항 신설).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: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버스의 본격적인 운항에 앞서 선착장 등 수상 교통 시설의 정의와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상의 혼란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은 물론,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과 수상 교통체계의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안 제2조제7호는 “한강버스 선착장”의 정의를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관련 규정의 해석과 실행에 있어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- 안 제3조제5항과 제6항은 한강버스 운영과 선착장 관리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,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하는 것으로 ‘약자와의 동행’ 및 시민참여 행정(정책)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.

아울러 시민 의견 수렴 방식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.

- 안 제4조제2항은 선박과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한 것으로 공공안전의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로 판단됨.
- 안 제8조제3항은 시의 지원 금액 규모와 방식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업자의 방만 경영을 막고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것을 명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향후 이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 또는 ‘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 협약서’ 등에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.